



제148 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과태료 근거 마련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57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220255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가. 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과태료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제 3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2호 신설)	2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220255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민수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08. 05.

다. 회 부 일 : 2024. 08. 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 한하여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구획을 점거하거나 주차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392호 제6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및 과태료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2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① 주차단위구획¹⁾ 무단 점거 및 ② 주차장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조의4</u> (생략) <u>제30조(과태료)</u> ① (생략) <u><신설></u>	<u>제6조의4(주차단위구획의 무단 점거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u> ① 누구든지 <u>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누구든지 <u>주차장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제1항에 따른 무단 점거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6조의5</u> (현행 제6조의4와 같음) <u>제30조(과태료)</u>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u>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u>

1)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한 자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최근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여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함으로써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 주정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하였

으며, 이러한 주차갈등이 폭력·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어 온 바 있음²⁾.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유형별 분석결과】

No.	민원유형	건수	비율(%)
-	전체 민원건수	76,528	100.0
①	보도(인도)위 사유지공간 불법주차 (인도, 보도 침범하거나 걸침 등)	39,760	52.0
②	이중주차/출자방해 불법주차	15,291	20.0
③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불법주차	5,306	6.9
④	건축물 후퇴선(건축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불법주차	3,164	4.1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3,069	4.0
⑥	외부차량 불법주차	541	0.7
⑦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 방해 불법주차	424	0.6
⑧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주차	77	0.1
⑨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10	0.01
⑩	기 타	8,886	11.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 2022.2.28.

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 2022.2.28. p.1.

【공동주택 등의 불법·이중주차 관련 주차시비로 인한 사건(일부 사례)】

연 도	사건 개요	비고
2021.10월	▶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그만 하고 집에 가라”며 싸움을 말리던 40대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 발생	상해
2020.12월	▶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내부 주차금지’ 위반스티커 발부 문제로 화가 난 입주민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통행 방해한 사건 발생	통행 방해
2020.09월	▶ 제주서부경찰서는 노형동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SUV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와 측면유리, 보닛 등에 자신의 변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양이·강아지 변을 바른 혐의로 A씨 입건 조사	재물 손괴
2020.06월	▶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와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세워두고 14시간 동안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발생	통행 방해
2017.12월	▶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시비로 입주민간에 시비가 붙어 주먹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입주민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발생	상해
2014.11월	▶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평소 주차 시비로 다투던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발생	살해
2007.03월	▶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문제로 경비원과 다투다 경비원을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 발생	살해
2004.01월	▶ 부산시 영도구 동산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이모씨가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입주민 유모씨와 화해하러 방문했다가 다시 시비가 붙어 격분한 끝에 유모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12층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발생	살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 2022.2.28.

그런데,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등 현행법의 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첫째, 「도로교통법」 제35조3)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3)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생략)

있으나, 동 조항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4)의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차단기 등으로 인하여 방문객들이 자유롭게通行할 수 없는 공동주택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⁵⁾의 입장임⁶⁾.

둘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조치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단

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通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5)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 3190 판결 등

6) 「교통안전법」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通行로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을 “단지내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通行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通行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기적으로 발생하는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형법」 제185조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는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교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⁷⁾ 벌칙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단순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2018년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주차를 방해한 운전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인천지방법원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음.

넷째, 「주차장법」 제8조의2에서는 주차방법의 변경, 자동차 이동 명령, 자동차 이동제한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 주차장 내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①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②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 ③ 지정 주차구획 외에 주차, ④무료 주차장 또는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일정기간 이상 고정적 주차(무단방치 등을 말함)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말하는 주차단위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차장⁸⁾은 ① 노상주차장(공영만 설치), ② 공영 노외주차장, ③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⁹⁾ 또는 ④ 공영 부설

8)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9)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차장(장기 무단방치의 경우만 해당)으로 제한되어 있음(참고1. 참조).

즉, 주차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개방주차장이 아닌 경우 주차질서 위반행위 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¹⁰⁾, 여러 유형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갈등을 해결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존재함.

< 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행위 및 행정조치 현황 >

구 분		규 정	규정 내용
노상주차장 (공영만 설치)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8조의2 제1항	1. 화물주차구획에 주차 2.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3. 주차시간 제한, 전용주차구획 등 위반하여 주차 4. 지정주차구획 외 주차 5.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
	행정조치	제8조의2 제1항~제3항	1.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 2. 자동차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3.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 후 매각, 폐차
노외주차장 (공영만 해당)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15조제2항	1.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2.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 3. 지정 주차구획 외에 주차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
	행정조치	제15조제2항	1. 자동차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2.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 후 매각, 폐차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10) 개방주차장 외에는 공영 부설주차장에서의 장기 무단방치의 경우에만 제재규정이 있음.

구 분		규 정	규정 내용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19조의3 제3항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
	행정조치	제19조제3항	1. 자동차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2.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 후 매각, 폐차

자료 :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전체 주차장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① 주차단위구획을 무단 점거하는 행위, ② 주차장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주차 및 통행 방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을 해소하는 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만이 아니라 민영 주차장,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도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적 영역으로서 대부분 입주자 및 관리자의 규약 등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국가의 행정력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2항¹¹⁾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¹²⁾에 따라 관리인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에 의무가 있음. 이러한 의무는 공동주택의 주차 관리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됨.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¹³⁾에서도 층간소음이나

11)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3)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략)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생략)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간접흡연 등의 경우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분쟁 방지를 위한 자치적인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내 자치규약 등을 통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6조의4제1항은 ‘주차단위구획¹⁴⁾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사람이 주차구획을 선점하여 비켜주지 않거나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건을 이용하여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위 등 다양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그런데, 주차단위구획 경계의 침범은 그 정도가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단속 기준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규약에 따라 주차방식 및 기준 등을 해당 공동주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행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 일반 국민이 볼 때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주차 선점을 위한 사람의 점유 또는 물건 적치 등의 주차방해 행위를 주차단위구획의 무단 점거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주로 단시간에 발생하는 이용자 간 갈등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그때마다 행정청이 개입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체계·자구적인 측면에서 현행법은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대해 각각 별도의 조항[제8조의2(노상주차장), 제15조(노외주차장), 제19조의

3(부설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중 무단 점거와 주차장 이용 방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안 제6조의4를 신설하고 있어 법률의 체계상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⁵⁾.

3) 관계 부처 등 의견

(국토교통부)

노상주차장은 도로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도로 점거 등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및 실효성 확보 수단이 도로교통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주차장법령에 별도 규정은 불필요함.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의 관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간 주차장 자리 선점을 위한 갈등상황에서 관리자의 개선 노력 없이 행정청이 곧바로 개입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정안의 금지 행위는 단기간내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아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실제 과태료

15)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및 실효성 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별도 규정 필요성은 낮음.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부과 가능성, 과태료 부과 시 지자체 행정부담, 법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함.

또한, 대부분의 민간 부설주차장은 사유지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입주자 및 관리자의 공동규약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민간의 자율영역인 부설주차장의 질서유지 위반행위까지 행정청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함.

(법무부)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과 같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주차단위구획’이 있는 주차장 범위 부분) 현행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차장은 ①노상주차장, ②노외주차장, ③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주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개방주차장에 해당되지 않는 부설주차장도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분) ①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므로, 「도로교통법」 제68조 등에 의하여도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고, ②노외주차장은 주차장 내부에서 이용자 간 단시간 갈등 상황에 대해 행정청이 개입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실익이 있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부설주차장’ 부분) ③부설주차장은 사적 영역으로서 대부분 입주자 및 관리자의 규약 등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력의 과도한 개입 우려가 있어,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 관리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등 행정청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강릉시)

주차단위구획안에 간단한 적치물(라바콘 등)을 놓아 차량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적치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행위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힘들므로 입증방법과 처분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 포함될 경우 단속업무량이 폭증하고 실효성 제고가 힘들. 따라서 민간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단속대상 포함 여부 및 단속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 이외에도 이중주차로 인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주차면이 안보이는(없는) 곳이나 주차구획선 옆에 이중주차하여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처벌 가능한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현행법을 상 주차장 질서위반 행위 및 제재 규정

주차장의 종류	설치자 및 법적근거	조치 근거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u>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u></u>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u>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u>도로교통법</u>」 <u>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u>한다.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u>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u>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u>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u>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u>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의 종류	설치자 및 법적근거	조치 근거
		<u>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u> <u>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u> <u>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u>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정</u>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u>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u> <u>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u> <u>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u>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에 대해 현행법은 “개방주차장”,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한하여 관리 조치 근거를 두고 있음.

참고2

주차장 주차질서 위반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제22대	민형배 의원 (24.7.9발의)	○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신설 (안 제19조의3) * 1.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하여 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 인접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타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3. 외부차량 무단주차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 등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차량 이동 권고 → 권고에 불응 시 관리자는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 요청 → 관리자의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견인 등 강제 처리
제21대	송기현 의원 (23.4.6발의)	○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주차방해행위* 금지 규정 및 금지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5백만원)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5항 등 신설) *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3

주차장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구분	개 요	차량 방치 기간	처벌 등 결과
송도 아파트	주차스티커 미부착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 시비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음 (2018.8.26) *입주민은 후문으로 주차장 이용	7시간 (입주민이 차량을 인도로 옮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11.30. 인천지법)
노원 상가	상가 세입자가 보증금 시비로 상가 주차장 입구를 트럭으로 막음('18.9.3)	9시간	노원구청에서 차주와 연락 후 견인
평택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 발급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언쟁 후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음 (2020.6.1) *입주민은 다른 통행로로 주차장 이용	14시간 (경찰 출동 후 차주가 차량 이동)	업무방해 혐의 입건
양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정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반발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음(2020.12.28)	12시간 (경찰 출동 후 차주가 차량 이동)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 벌금 150만원 선고
강남 아파트	여자친구의 절교를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봉쇄 지시 및 이행 (2020.12월)	2시간	업무방해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 ⇒ 벌금 7백만원, 500만원 선고
인천 논현동 상가	상가 임차인이 주차요금 징수에 불만을 품고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음 (2023.06.22)	7일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 영등포 체육 시설	다수 민사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50대가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차단기 앞 막음('23.6월)	30분	업무방해혐의로 벌금3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피고 항소
인천 아파트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음('24.5.7)	10시간	경찰은 관리사무소 업무방해를 적용하여 견인 조치 *경찰청장은 “이런 현장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리 및 조치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공유” 지시(2024.5.31)

< 관련 규정 >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육로'에 대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 13376 판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